

202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153
----------	-----

제출년월일 : 2023. 8.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평창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3차 변경계획은
 - 토지 취득 : 1건 1필지 2,463㎡ 250,000천원
 - 건물 취득(변경) : 3건 4동 1,333.49㎡ 2,550,000천원
- 토지 취득
 - 평창읍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차고지 신축사업 부지 매입
 - 평창읍 주진리 89-1번지 2,463㎡ 250,000천원
- 건물 취득
 1. HHAPPY700 상상놀이터 조성사업 : 1동 441.62㎡ 1,900,000천원
 2. 평창읍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차고지 신축 : 2동 600㎡ 650,000천원
 3.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조성사업(변경) : 증291.87㎡
 - 당초 : 용평면 재산리 1520-25번지 연면적 1,700㎡
 - 변경 : 용평면 재산리 산1195-6번지 일원 연면적 1,991.87㎡

3. 붙임자료

- 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총괄표) 1부
- 나. 2023년도 제3차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 1부
- 다.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사업계획서(부서별) 1부
- 라. 관계법령 발췌 1부. 끝.

[붙임 나]

2023년도 제3차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 목록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예정가격	취득 처분 시기	취득처분사유	비 고 (소유자)
	지목	소재지	수량				
토지취득 합계 (1건 1필지)			2,463	250,000			
소계			2,463	250,000			
1필지			2,463	250,000			
1	전	평창읍 주진리 89-1	2,463	250,000	2023	평창읍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차고지 신축 부지	취**
건물취득 합계 (3건 4동)			1,333.49	2,550,000			
소계 (1건 1동)			441.62	1,900,000			
1	대지	평창읍 하리 113-11	441.62	1,900,000	2024	happy700 상상놀이터 조성	
소계(1건 2동)			600	650,000			
2	전	평창읍 주진리 89-1	600	650,000	2024	평창읍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차고지 신축	
소계 (1건 1동)			291.87	0			
3	전	용평면 재산리 1520-25	△1,700	△9,800,000	2024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당초)	
	전 임야 도로	용평면 재산리 산1195-6외 3필지	1,991.87	9,800,000	2024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변경)	

[붙임 다]

균유재산 취득 및 처분 사업계획서

사 업 명	부서	쪽
1. HAPPY700 상상놀이터 조성사업	가족복지과	6
2. 평창읍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차고지 신축사업	환경과	8
3.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조성사업(변경)	산림과	11

HAPPY700 상상놀이터 조성사업

- 계절, 미세먼지 등 외부 환경의 제약 없이 어린이가 안전하게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공간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2024. 5.
- 위 치 : 평창군 평창읍 하리 113-1 (평창군문화복지센터 앞)
- 사업량 : 연면적 441.62㎡ (증축)
- 총사업비 : 1,900백만원(지방소멸대응기금)
- 사업내용 : 유아놀이기구, 어린이 모험놀이기구, 휴게공간 등 설치

□ 검토사항(필요성)

- 영유아부터 초등 연령까지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공간을 조성하여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 및 인구 감소 문제 대응 기반 마련
- 복합문화시설을 연계한 특화된 놀이터를 설치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가족친화적 놀이·문화·휴식 공간 제공

□ 취득대상 재산내역

- 건물(증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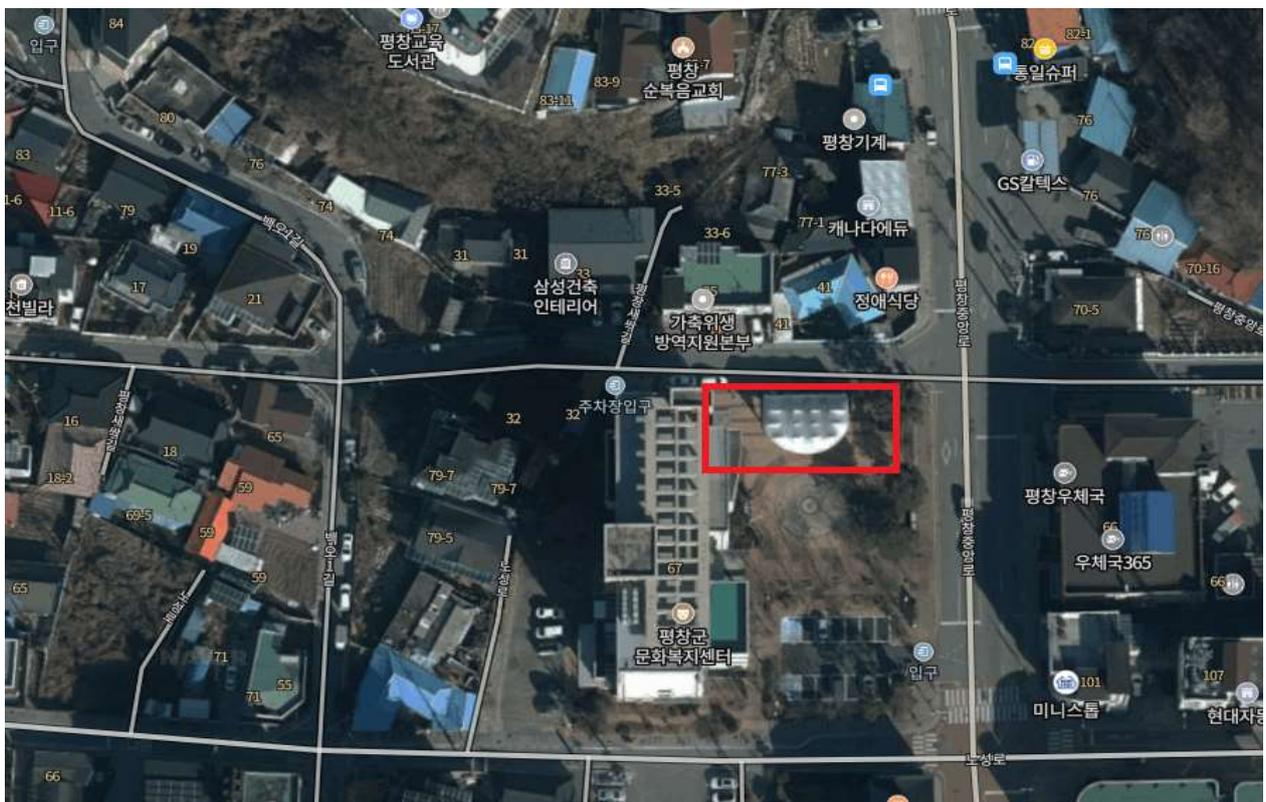
(단위: ㎡, 천원)

소재지	지번	증축 연면적	사업비	비고 (주요시설)
평창읍 하리	113-1	441.62	1,900,000	실내어린이놀이터, 휴게실, 화장실, 관리실, 창고 등

□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HAPPY700 상상놀이터 조성 추진계획 수립(변경) : 2023. 1.
- 실시설계 : 2023. 3. ~ 7.
- 2023년도 제7회 평창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23. 8. 23.
- 공사착공 및 준공 : 2023. 9. ~ 2024. 5.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현장사진

- 평창읍사무소에 「행복+학습센터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청소차 차고지 이전 신축으로 환경미화원 근무환경개선과 청소행정 업무능률을 높이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평창읍 주진리 89-1
- 사업량 :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차고지 1식
- 사업내용 : 미화원대기실, 차고지, 재활용보관창고, 울타리, 부대공사 등
- 사업비 : 900,000천원(군비)
- 사업기간 : 2023. 9. ~ 2024. 6.

□ 검토사항(필요성)

- 현 평창읍사무소 부지에 「행복+학습센터 조성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청소차 차고지, 재활용보관창고 등의 환경관련 시설의 이전신축이 불가피하여 2024. 6월 평창읍사무소 철거전까지 이전 신축하고자 함.

□ 취득대상 재산내역

- 토지

(단위 : ㎡, 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재산가액	
					기준가격	예정가격
평창읍 주진리	89-1	전	2,463	2,463	116,747,200	250,000,000

○ 건물(신축)

(단위 : m²,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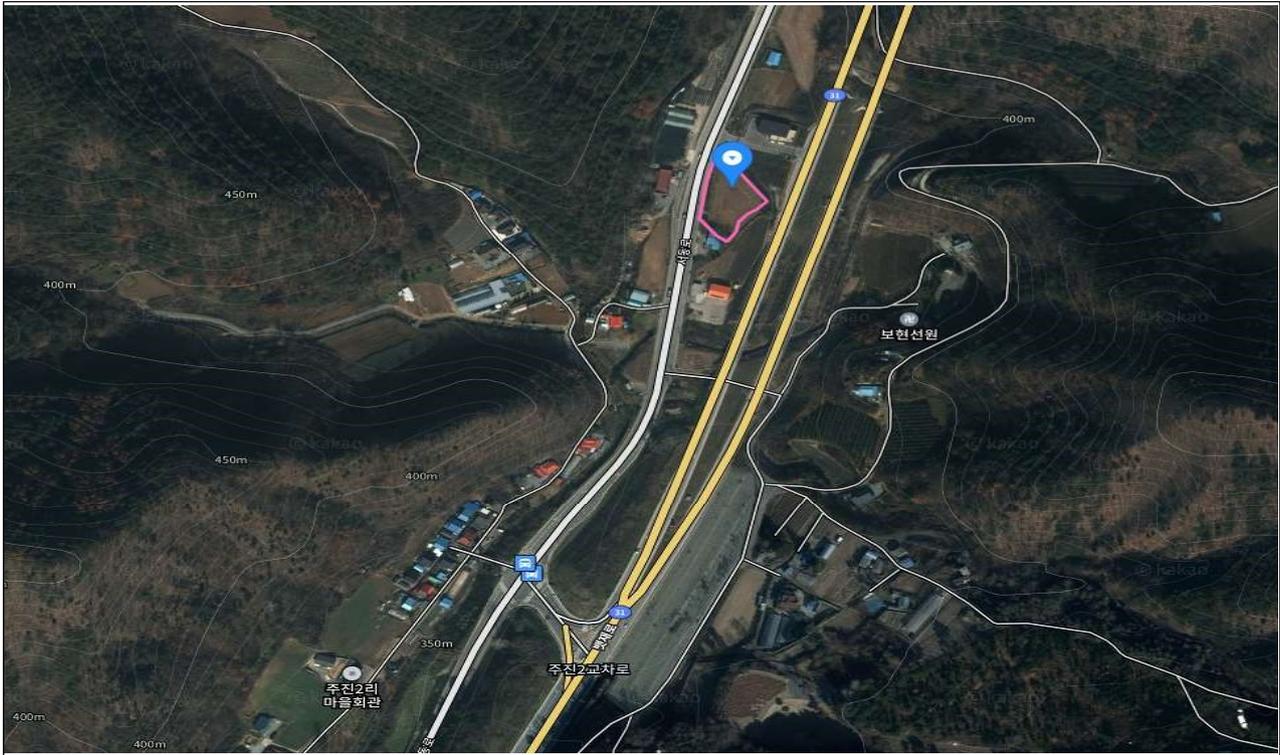
소재지	지번	연면적	규모	구 조	사업비
평창읍 주진리	89-1	600m ²	지상1층	철골조	650,000,000

□ 향후계획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 2023. 9.
- 2회 추경예산편성 : 2023. 9.
- 부지 감정평가 및 매입 : 2023. 10.
- 설계용역 및 신축공사 : 2023. 10. ~ 2024. 6.

붙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 위치도



□ 현장사진



- 산양삼의 주산지로서 산양삼 산업육성 및 바이오산업 정책기반 마련
- 귀산촌 지원 체계화를 위한 센터 조성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지방소멸에 대응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당초)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 1520-25번지(군유지)
(변경)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 산1195-6번지 일원(군유지)
- 사업규모 : (당초) 연면적 - 1,700㎡, 사업부지 - 5,771㎡
(변경) 연면적 - 1,991.87㎡, 사업부지 - 9,156㎡
- 사 업 비 : (당초) 98억원(국비 49, 도비 14.7, 군비 34.3)
(변경) 98억원(국비 49, 도비 24, 군비 25)
- 사업기간 : 2022. 10. ~ 2024. 12.
- 사업내용 : 대강당(다목적실), 상품개발실, 홍보관, 교육센터 등

□ 추진사항

- 공모사업 선정 : 2022. 04. 12.
- 강원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 : 2022. 08. 09.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2022년 5차, 공유재산취득) : 2022. 11. 08.
- 공공건축 기획용역 : 2022. 10. 18. ~ 2023. 03. 31.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공공건축지원센터) : 2022. 3. 7. ~ 4. 11.
 - 공공건축 심의(허가과) : 2023. 5. 1. ~ 5. 24.
- 건축설계 제안 공모 추진 : 2023. 5. 30. ~ 07. 11.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23. 8. 1. ~ 2024. 1. 27.

□ 검토사항(필요성)

- KTX평창역 인근에(150m) 위치하여 홍보 효과 극대화 도모
- 당초 부지에 비해 접근성 향상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 및 편의성 제공

□ 취득대상 재산내역

○ 건물(신규 건립)

(단위:m², 백만원)

구분	시설명	위치	연면적	규모	구조	사업비
당 초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 1520-25번지	1,700	지하1층 지상2층	철근 콘크리트조	9,800 (국4,900) (도1,470) (군3,430)
변 경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 산1195-6번지 일원 (산1195-8, 1440-57, 1440-58)	1,991.87	지상2층	철근 콘크리트조	9,800 (국4,900) (도2,400) (군2,500)

□ 향후계획

- 공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인허가 등 : 2024. 1. ~ 2.
- 공사 착공 및 준공 : 2024. 3. ~ 2024. 12.

붙임 지적도 및 위치도 1부. 끝.

□ 지적도



□ 위치도



관련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법 제10조의2 제1항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개정 2022. 4. 20.>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추가 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12.30.>

-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의 1건당 기준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신설 2022.12.30.>